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0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정춘생·김준형·김재원

조 국・이해민・차규근

서왕진 · 신장식 · 김선민

황운하 • 박은정 • 이수진

복기왕 • 이상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 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 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 중 최초 30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u>출산휴가</u> 를	<u>출산휴가 또는</u>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u>임치료휴가</u>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 2.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 저 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 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 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 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② (생략)

1		2	(혂행과	간으)
Ι.	•	Δ.	(4, 2)	千豆

<u>3</u> .	Γ _ι ΄	l 네 i	1용	평등	-과	일 •	가	정
	양립	지원	에	관현	<u></u> 법	률」	ス	1
	<u>8</u> 조의	3에	따	른	난일	치료	휴	가
	<u>기간</u>	중	최초	<u> 3</u> ()일.	다민	<u>ŀ,</u>	피
	<u>보험</u>	<u> </u>	속	한 스	<u> </u> 업	장이	우	선
	지원	대싱	-7] ⁽	<u>업인</u>	경-	우에	한	정
	한다.							

(2) · (3) (연행과 같음)
데77조(준용) ①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
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② (현행과 같음)